# 제268회(임시회) 제 4 차본희의 <br> 2008년 3월 14일 (금) 

심 사 보 고 서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begin{aligned}
& \text { 충 청 북 도 의 회 } \\
& \text { 형정자치위원회 }
\end{aligned}
$$

##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레안 심 사 보 고 서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8년 2월 22 일

이종호 의원 외 29 인
(이종호•김 환 동•조영 재•연 만흠•이 필용•강 태원•박 재국• 민경 환•이 대원•박 종갑•이 규완•이 영 복•정윤숙•이 범윤•
이기동•최재옥•박영웅•임현•이언구•김인수•송은섭•오용식•
최미애•최광옥•김화수•장주식•권광택•심흥섭•김 법기•한창동)
2. 회 부 일 자 : 2008년 2월 25일

##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26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2008. 3.10)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종호의원)

1. 제안이유

가. 본 조례는 충청북도가 혁신도시 분산 배치 대안으로 정부와 협의 를 거쳐 제천에 별도의 종합연수타운을 조성하기로 결정 함에 따 라,

나.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및 조성 위원회 설치 등 제천종합연수타운을 효율적으로 조성 하기 위 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1) 제천종합연수타운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충청북도지사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제천시장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시책에 연계하여 자체 지원 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3) 충청북도와 제천시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구축으로 제천종합 연수타운 조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안 제4조 및 제5조)
4) 제천종합연수타운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의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5) 도지사가 지원하는 사업은 연수기관 유치활동 및 홍보,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 공공기관 종합연수원의 설치, 특수목적고 및 어학타운 설립 지원, 그 밖에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을 위하 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며, 지원사업에 소 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6)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수기관유치추진단 및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자문위원회 설치 (안 제6조 및 제7조)
7) 연수기관 유치를 위한 전담인력과 연수타운 조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위원회 설치가 필요함.
8) 도지사 소속하에 연수기관유치추진단 및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9) 연수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자문이 이루어 지고, 연수 기관 유치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III. 검토보고 요지

(행정자치전문위원 고일준)
이 조례안은 2007년 10 월 1 일, 충청북도가 혁신도시 분산배치 대안 1 ) 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처 제천에 별도의 종합연수타운을 조성하기로 확 정 - 발표함에 따라,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안 제 4 조의 지원사업과 안 제 5 조의 재정지원이 되겠음.

충청북도가 제천종합연수타운(사업개요는 붙임 참조) 조성을 위하여 지 원하는 사업은

1. 연수기관 유치활동 및 홍보
2. 부지조성,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정보통신 인프라 등 기반시설 구축
3. 공공기관종합연수원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2003. 6 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 방침 발표(정부)
2005. 12 월 진천•음성혁신도시 선정 및 3 개 연수기관 제천 개별이전 결정(충청 북도)
2006. 5월 진천•음성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건설교통부)

$$
\Rightarrow 3 \text { 개 연수기관 제천 분산배치 사실상 무산 }
$$

4.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어학타운 등의 설립 지원
5. 기타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재정지원은 제4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연수기관 유치 및 홍보 등 행정적 지원과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함으로써 제천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여 연수타운을 효율적으로 조성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가 되며,

또한, 안 제4조의 지원사업은 2007년 10월 9일 충청북도-제천시-대 한주택공사가 체결한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을 위한 기본협약서(협약서 는 붙임 참조)"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견은 없음.

다만, 안 제 5 조의 재정지원에 있어서 "제 4 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구체화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 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O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 제 호

##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천종합연수타운"이란 제천시 신월동과 봉양읍 미당리 일원에 조성하 는 연수기관의 집단화 지역을 말한다.
2. "연수기관"이란 공공기관•단체, 기업체가 교육, 훈련, 후생복지 등을 위하 여 제천종합연수타운 내에 건립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공기관종합연수원"이란 공공기관•단체가 제천종합연수타운 내에 연합 하여 설치•운영하는 연수기관을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책무) (1)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천종합 연수타운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제천시장은 도지사가 추진하는 시책과 연계하여 자체 지원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 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수기관 유치활동 및 홍보
2. 부지조성,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정보통신 인프라 등 기반시설 구축
3. 공공기관 종합연수원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어학타운 등의 설립 지원
5. 기타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1)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하여 국가재정 확 보에 노럭하여야 한다.

제6조(연수기관유치추진단의 설치) (1) 도지사는 제천종합연수타운에 입주할 연 수기관 유치를 위하여 연수기관유치추진단(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도지사는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천시장에 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3)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운영) (1) 도지사는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자문위원회는 20 명 이내로 구성 하며,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square$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 39 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1)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11(생략)

제 66 조(의안의 발의) (1)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 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 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2)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square$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 20 조(의안의 제출•발의) (1)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교육감•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 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2)모든 의안은 집회일 7 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 5. 16)

## 참 고 자 료

## $\square$ 제천종합연수타운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07년~2013년 (5년)

○ 위 치 : 제천시 신월동, 봉양읍 미당리 일원
○ 조성규모 : $2.98 \mathrm{~km}(1$ 차 개발 1.69 km , 2 차 개발 1.29 km )
○ 사 업 비 : 6,000억원(부지조성 3,800, 보상비 2,200 )
○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2. 추진상황

- ‘07.10. 9 MOU체결(도지사, 시장, 주택공사)

○ ‘07.11.29 수도권 연수기관유치설명회
○ '08. 1.25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발주(주공)

- 제천종합연수타운 기본구상안 수립
- 개발 수요조사 분석, 종합연수시설 건립 및 운영방안 등

3. 향후계획

○ '08. 3월 제천종합연수타운 지원조례 제정
○ ‘08. 9월 수도권 연수기관유치설명회

- ‘09.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

○ '09.10월 실시계획 수립
○ '09.11월 종합연수타운 착공

## $\square$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을 위한 기본협약서

충청북도, 제천시와 대한주택공사는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을 위해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협약한다.

1. 충북 제천시 신월동•봉양읍 미당리 일원 $2.98 k \mathrm{kn}^{\text {에 }}$ 제천종합연수타운을 조성한다. 1단계로 1.69 km 를 조성하되 조성면적은 대한주택공사의 용역 결과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사업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가 참여하되 1단계 사업의 경우 2007년중 에 착수하고 대한주택공사와 제천시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착 공한다.
3. 가칭 ‘공공기관종합연수원' 설치 - 운영 등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 업을 위해 대한주택공사 주관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참여한다.
4. 충청북도와 제천시에서는
(1) '수도권 연수기관 유치설명회'를 금년 11월 이전 서울에서 개최한 다.
(2) 연수시설부지 매각손실범위 내에서 지구내•외의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을 건설한다.
5. 충청북도에서는
(1) 3 개 기관 이상의 연수시설을 유치하고, 특목고 설치를 적극 지원 한다.
(2) 충청북도는 가칭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여 적극 시행한다.
6. 제천시에서는
(1) 법원 • 검찰청사,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4 개 이상의 기관 및 3 개 기 관 이상의 연수시설을 유치한다. 시청사 이전은 용역과정에서 검 토한다.
(2) 부지 분양가 저감을 위하여 폐기물처리 및 상•하수도시설에 대 한 원인자 분담금 감면을 적극 추진한다.
7. 본 기본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07년 10월 9일

충청북도지사 정우택

충청북도 제천시장 엄태영

Pi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